

#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주)우리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이 “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대행(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회사”와 “은행”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회사”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② “회사”는 “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 기준가격 통보
3. 기타 제1항의 은행 업무에 대한 협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에 따라 회사가 은행에게 수행 또는 지원하여야 하는 업무

## 제3조 (업무협조)

① “회사”와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② “회사”와 “은행”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시스템 포함), 팩시밀리(FAX), 전자전송 (e-mail)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회사” 와 “ 은행” 은 동조 1항, 2항과 관련하여 주소, 연락처, FAX 번호, e-mail 주소 등 세부사항이 명시된 공문 및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호 공지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유선으로 연락한 후 동일한 절차에 의거하여 공지한다.

#### 제4조 (준수의무)

① “ 은행” 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회사” 와 “ 은행”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③ “ 회사” 와 “ 은행” 은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감독기관의 명령, 금융투자협회(이하 “ 협회” 라 한다)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 은행” 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 (양도의 제한)

“ 회사” 와 “ 은행” 은 상호간에 사전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 (판매창구의 분리)

“ 은행” 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7조 (집합투자증권 운용관련 불건전영업행위)

① “ 회사” 는 “ 은행” 및 “ 은행” 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 은행” 은 “ 회사” 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에 간섭하지 못하며, “ 은행” 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증권의 매입을 “ 회사” 에게 요구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 회사” 의 자산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광고선전물의 사전신고)

① “ 은행” 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게시·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의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투자광고규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규정” 제2-4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기 전에는 광고·선전물을 게시·배포할 수 없다.

#### 제9조 (수익률의 표시)

“은행”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통장상 의무기재사항)

“은행”은 “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증권 저축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2.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
3.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음”을 표시하는 문언

#### 제11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은행” 또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법률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 1 항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되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 없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 (추가약정)

①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 회사” 와 “ 은행” 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회사” 와 “ 은행” 이 위탁판매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에 추가 또는 변경할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붙임」 에 기재된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미친다.

#### 제13조 (세부사항)

① 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회사” 와 “ 은행” 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판매상품, 판매한도, 매각 및 환매절차, 상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제14조 (책임)

“ 회사” 와 “ 은행” 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손해배상책임 조항 및 관련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관할법원)

“ 회사” 와 “ 은행” 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16조 (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

① “ 회사” 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 은행” 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은행” 은 “ 회사” 로부터 제공 받은 집합투자규약을 “ 은행” 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은행” 은 “ 회사” 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 회사” 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제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모순 등으로 계약 이행을 못할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하고자 할 경우는 각 당사자는 상호 성실히 협의에 임하도록 하고 쌍방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변경은 “ 회사 ” , “ 은행 ”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유효하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회사 ” 와 “ 은행 ” 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회사 ” 와 “ 은행 ” 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년 4 월 20 일

위탁회사(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주)우리은행  
대표이사 이 중 후



붙임 : 위탁판매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1부. “ 끝 ”

붙임 : 위탁판매계약서에 대한 붙임 자료

### 집합투자기구 목록

순번	집합투자기구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009 년 4 월 20 일



위탁회사(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응 일



판매대행회사(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주)우리은행  
대표이사 이 종 휘



##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세부업무협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와 (주)우리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한다)은 2009년 4 월 20 일자로 체결된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 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서는 "회사" 와 "은행" 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기본계약서와의 관계)

- ①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기본계약서의 일부로서 기본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기본계약서 및 세부업무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협약서가 우선한다.

### 제3조 (대행 표시)

"회사" 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은행" 이 위탁판매함에 따른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기타 안내문 및 광고를 포함한 대외서류에는 "회사" 가 집합투자자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 다만, "은행" 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 (업무 분담)

- ① "은행" 은 "회사" 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자산운용에 참여하지 않고 "은행" 이 판매하는 "회사" 의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를 포함한 기본계약서 제2조 제1항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② "회사" 와 "은행" 은 기본계약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위탁판매업무 이외에는 이 업무협약서 상으로는 어떠한 추가적인 관계도 없으며 각각 상대방의 대리인 등의 관계가 아니다.

### 제5조 (위탁판매 범위)

"은행" 이 위탁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목 및 판매한도는 "회사" 와 "은행"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은행" 에게만 판매하기 위하여 "은행" 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은 "회사" 와 "은행" 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은행"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없다.

### 제6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①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그 설정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 ②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일자, 집합투자기구명, 설정좌수 (해당할 경우) 및 금액 등을 투자자의 설정청구일에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판매가능할 경우에 이 설정청구를 승인한다. "회사"는 승인된 설정청구 내역을 설정당일에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집합투자기구 설정대금을 설정일에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의 영업마감시간까지 지정한 자금결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 제 7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해지)

- ① "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은행"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은행"은 이를 환매청구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상호 협의한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름), 관계법령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회사"에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청구하며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동일날짜에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복수의 판매대행회사가 일부 해지를 청구할 때 해지대상 집합투자기구 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해지청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급 가능한 금액을 관련법규 등에 따라 지급한다.
- ⑤ 해지청구대금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배상책임은 개별 상품 집합투자규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8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은행"이 위탁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하되, "은행"과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 후 시행일 2일 이전에 당행의 수시공시 담당자에게 유선,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리고,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 제 9조 (자금결제)

“ 회사” 와 “ 은행” 은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은행계좌 등 결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0조 (기준가격의 통지)

① “ 회사” 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매일 영업시간 개시이전까지 전산시스템(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포함),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또는 “ 은행” 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 은행”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통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 회사” 는 지체없이 지연사유와 통보가능시간을 “ 은행”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피한 경우, “ 회사” 는 유선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하고 이후 팩시밀리(Fax)등을 통하여 정식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회사” 는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 은행” 또는 수익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회사” 의 책임으로 하며 “ 은행” 은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로 인한 수익자 또는 “ 은행” 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 회사” 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 11조 (판매보수)

①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 회사” 가 “ 은행” 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 은행” 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 회사” 와 “ 은행” 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회사” 는 제1항의 판매보수를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판매보수 인출일에 “ 은행” 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지시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12조 (판매관련 비용)

①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관련 비용은 “ 은행” 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회사” 와 “ 은행” 이 협의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관련 비용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기타 안내문, 통장 등의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 등 영업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제13조 (자료제공)

- ① “ 회사” 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하여 “ 은행” 이 투자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자의 확인을 표기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재산 편입내역을 “ 회사” 와 “ 은행” 이 정한 방법으로 “ 은행” 에게 제공한다.
- ② “ 회사” 는 “ 은행” 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 은행” 에게 지체없이 제공한다.
- ③ “ 회사” 는 “ 은행” 의 요청 시 “ 은행” 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범위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④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이나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 “ 회사” 는 그와 관련한 결산내역 또는 상환내역 등을 “ 은행” 에게 통보한다.

### 제14조 (통보방법)

“ 회사” 와 “ 은행” 은 위탁판매업무와 관련된 교환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번호로 팩시밀리(Fax) 이메일(e-mail), 전산시스템(증권에탁결제원 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집합투자재산의 건전성 확보) “ 회사” 는 “ 은행” 이 위탁 판매한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며 “ 은행” 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은행” 에게 설명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 (비밀유지의무)

- ① “ 회사” 와 “ 은행”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존속 중이나 만료 후에도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회사” 와 “ 은행” 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조 1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 ④ “ 회사” 와 “ 은행” 은 기본계약서 및 본 세부업무 협약서의 어떠한 내용도 광고, 방송, 판촉, 마케팅 기타 활동에 상대방의 이름,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 약어, 유사어, 기타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세부업무 협약서 제3조에 따른 사용 및 기타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대방의 사전 동의에 따른 사용 또는 인용은 가능하다.

### 제17조(계약해지의 효과)

- ① 기본계약서 제11조에 따라 “ 회사” 와 “ 은행” 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 은행” 이 본 계약해지일 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전부 해지되거나 신탁원본이

전액상환될 때까지 기본계약서 및 본 세부업무 협약서의 내용 중 당사자간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 회사” 와 “ 은행” 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본 세부업무 협약서의 제4조에서 정한 규정은 유효하며 기본계약 및 본 협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그대로 유효하다.

#### 제18조 (기타)

① “ 은행” 은 제3자에 대하여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이나 “ 회사” 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실은 “ 은행” 의 책임으로 한다.

② “ 은행” 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③ 본 세부업무협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안은 당사자간의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④ “ 은행” 은 “ 회사” 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취득권유 시 “ 고객 파악” 및 “ 적합성” 의 원칙 등 판매행위의 상대방 선정 및 관련업무상 동종업계에서 통용되는 주의의무를 고수할 것을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⑤ “ 은행”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 관련되는 제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판매업무(판매 및 광고 관련활동 등을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규정을 따르는데 동의한다. “ 은행” 의 이 조항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 은행” 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⑥ “ 회사” 는 “ 은행” 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가격정보, 명세내역, 매매내역 등을 관련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 은행” 과 “ 회사” 가 협의한 양식과 전송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⑦ “ 회사” 는 “ 은행” 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 공시사항 건 변경일/시행일 이전에 지체없이 당행의 수시공시 담당자에게 유선,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등으로 사전에 알리고,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⑧ “ 회사” 와 “ 은행” 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음과 본 거래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 법령을 위반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동의한다. 본 조항을 한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한 당사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부담하게 된 직접적인 손실, 비용, 벌금이나 과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 (기타계약)

① 본 세부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한 추가약정은 “ 회사” 와 “ 은행” 의

상호 합의에 의해 체결될 수 있다.

② "회사"와 "은행"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쌍방 계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 하고 기명 날인함으로써 보다 더 자세한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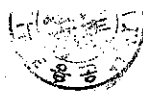
#### 제20조(계약의 수정)

본 세부업무협약서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수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수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21조 (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조정하는 관할법원은 "은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회사"와 "은행"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09 년 4 월 20 일



위탁회사(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주)우리은행  
대표이사 이 종 휘

